

의안번호	2212436
의 퇴 인	김정재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5.
추계번호	25A4661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,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,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3,100만원, 2031년 7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1,500만원(연평균 8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(안 제7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	60	60	60	60	60	300	60
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	11	11	11	11	11	55	11
합 계	131	71	71	71	71	415	83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)	○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·산업적·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(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(제1항) ○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9조(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)	○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(녹색철강기술의 보조금 지원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브릿지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－ 2.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－ 3.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철강기술로 선정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○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2조(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)	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5조(특구 육성시책)	정부는 특구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, 세제, 재정,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8	안 제17조(민원의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)	특구 입주기업이 철강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8조(보조금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19조(특구의 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20조(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)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를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수소연료공급 시설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,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2	안 제21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비 - 4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- 5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	
13	안 제22조(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.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14	안 제23조(특구 토지의 매입 및 임대)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음.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15	안 제25조(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·확충)	○ 정부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·확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6	안 제27조(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3항) - 1. 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의 설치·확충 - 2.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- 3. 특구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- 4. 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- 5. 특구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- 6. 철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- 7.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·운영 - 8.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- 9. 철강산업의 기술개발사업 - 10. 철강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- 11. 철강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2.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- 13.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- 14. 그 밖에 회계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 - 15. 그 밖에 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17	안 제30조(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(이하 “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- 2.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사업 - 3. 철강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- 4. 그 밖에 국내 철강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	재량규정
18	안 제32조(국제협력 등의 지원)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, 해외시장 진출 지원, 전문인력 교류,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9	안 제33조(세제 및 금융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혁신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0	안 제36조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○ 정부는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- 1. 철강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- 2. 철강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업 - 3. 직업 훈련,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업 - 4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업 - 5. 퇴직근로자 등 철강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·지식의 활용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- 6. 철강 제조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, 근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- 7.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업 - 8. 그 밖에 철강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
21	안 제37조(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(제1항) ○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—
2	안 제7조(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)	○	—
3	안 제8조(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	—
4	안 제9조(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)	○	—
5	안 제11조(녹색철강기술의 보조금 지원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-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기술에 대한 지원,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, 국제협력 등의 지원,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6	안 제12조(녹색철강기술의 조세 감면 등)	X	
7	안 제15조(특구 육성시책)	X	
8	안 제17조(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)	X	
9	안 제18조(보조금 지원)	X	
10	안 제19조(특구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1	안 제20조(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,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, 국제협력 등의 지원, 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12	안 제21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X	
13	안 제22조(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)	X	
14	안 제23조(특구 토지의 매입 및 임대)	X	
15	안 제25조(철강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·확충)	X	
16	안 제27조(철강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)	X	
17	안 제30조(철강산업 기술개발 사업 등의 추진)	X	
18	안 제32조(국제협력 등의 지원)	X	
19	안 제33조(세제 및 금융지원)	X	
20	안 제36조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X	
21	안 제37조(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철강산업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철강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안 제10조 (녹색철강기술의 선정·변경 및 해제 등)	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	기후대응기금	5,167	2,584	2,584
	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	기후대응기금	7,000	5,178	5,178
	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(*철강분야)	기후대응기금	10,290	34,722	20,747
	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 술개발(수소환원제철 공정)	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	10,000	4,000	—
안 제30조 (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)	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 발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18,354	12,917	11,625
	소재부품기술개발(*철 강분야)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33,799	39,850	40,700
	철강·금속디지털전환 (DX)실증센터구축	일반회계	—	2,800	2,240
	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(*철강분야)	기후대응기금	10,290	34,722	20,747
	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	기후대응기금	5,167	2,584	2,584
	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	기후대응기금	7,000	5,178	5,178
	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 발	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 별회계	18,354	12,917	11,625
	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 술개발(수소환원제철 공정)	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	10,000	4,000	—
	철강·금속디지털전환 (DX)실증센터구축	일반회계	—	2,800	2,240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안 제32조 (국제협력 등의 지원)	국제부담금 (철강글로벌포럼)	일반회계	57	62	33
안 제36조 (철강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)	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(*철강분야)	일반회계	1,500	1,000	1,5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 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제정안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2027년에 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EU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 공급망 영향평가”(산 업통상자원부, 2023년, 4,545만원), “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”(산업통상자원부, 2021년, 7,431만원) 등이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 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(안 제7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
작성(안 제8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 작성에 따른 비
용”으로 하며, 동 조사 및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을 지
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제정안의 조사 및 통계 작성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
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
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에너지, 기후변화 대응계
획 조사 분석”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1년, 4,840만원), “2019 철강 산업경쟁
력조사”(산업통상자원부, 2019년, 8,182만원) 등이 있음

□ 제정안에 따라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용
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(안 제7 조) 및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8조)	60	60	60	60	60	300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

○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－ 안 제9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
－ 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

1.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녹색철강기술의 선정·변경·해제와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, 비용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
3. 철강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의 설치·확충에 관한 사항
4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관계 부처의 규제 일원화 및 인·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
5. 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
7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
8. 철강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관한 사항
9. 철강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
10. 녹색철강특구의 지정·조성·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1. 녹색철강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·허가 의제 사항
12. 녹색철강특구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·허가 의제 사항
13.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(안 제9조)	11	11	11	11	11	55	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